

# 빌리브 메트로뷰 [특별공급 신혼부부 당첨자] 소득기준 및 증빙서류 안내

##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

공급 유형	구분	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
우선공급75% (기준소득)	배우자 소득 無	100% 이하	5,401,814원	6,165,202원	6,699,865원	7,348,891원	7,997,917원	8,646,943원
	배우자 소득 有	120% 이하	6,482,177원	7,398,242원	8,039,838원	8,818,669원	9,597,500원	10,376,332원
일반공급25% (상위소득)	배우자 소득 無	100% 초과 ~120% 이하	5,401,815원 ~ 6,482,177원	6,165,203원 ~ 7,398,242원	6,699,866원 ~ 8,039,838원	7,348,892원 ~ 8,818,669원	7,997,918원 ~ 9,597,500원	8,646,944원 ~ 10,376,332원
	배우자 소득 有	120% 초과 ~130% 이하	6,482,178원 ~ 7,022,358원	7,398,243원 ~ 8,014,763원	8,039,839원 ~ 8,709,825원	8,818,670원 ~ 9,553,558원	9,597,501원 ~ 10,397,292원	10,376,333원 ~ 11,241,026원

-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**부부 중 1인 소득** 관련 유의사항
  - 우선공급 소득기준 공급유형 대상자 :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  - 일반공급 상위소득기준 공급유형 대상자 :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
- ※ **가구당 소득의 산정**에 포함되는 대상(가구원수)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)으로 하되,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신청자의 성년인 직계존·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(단,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)
- ※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÷ 근무월수를 말하며,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(21번)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상 과세대상금액을 기준으로 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,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.
- ※ 휴직 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(건강의료보험증서상 직장가입자)
  - 전년도에 휴직 등(파업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포함)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전년도 소득을 산정함.
  -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함.
  -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 등을 하고 당해연도에 복직 등(정상적으로 근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)을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함.
  -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의 동일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함.
- 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(1인당 평균소득(405,805원) \* (N-8))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
## 소득증빙서류

건강보험	담당자격	소득입증 확인 및 제출서류	발급처
직장 가입자	일반근로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 : 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(원본) ②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	① 해당직장 / 세무서 ② 해당직장
	금년도 신규취업자 / 전직자	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로 월평균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	①, ②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 : 직인날인) ②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"주(현)"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	①, ②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보육교사, 학원강사 등)	*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	* 해당직장
지역 가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, ②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*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(원본)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(원본) 제출	* 세무서
	신규사업자 (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)	① [국민연금 가입자]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* 표준(기준)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[국민연금 미가입자]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*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	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②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	① 세무서 ② 등기소
	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)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(직인날인)	① 해당직장 / 세무서 ② 해당직장
	국민기초생활수급자	*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* 주민센터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근로자	*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	* 해당직장	
무직자	* 비사업자 확인 각서	* 건보주택 비치	